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2020년

농업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가이드



2020년 6월 29일 ~ 7월 31일

신청장소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문 의 FTA이행지원센터(1899-4114) 또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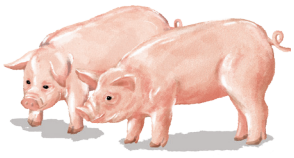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FTA 피해보전직불금

1 올해는 3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돼지고기



녹두



밤



※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별로 법정 지원 한도액이 있음(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2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자인지 다음 요건을 확인해 보고,

-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지) 또는 지방산림청(임야)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돼지고기 '12.3.15(한·미 FTA), 녹두 '12.3.15(한·미 FTA), 밤 '15.12.20(한·베트남 FTA)
-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경우 및 임대·위탁 등 품목 특성·재배방식에 따른 세부사항은 품목별 사업시행지침에서 확인

3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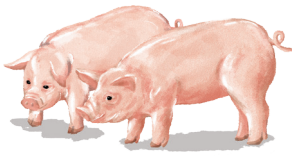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증명 서류(본인이 준비해야 함)**
  1. 2019년에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19년도 지원대상 품목 판매 및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2.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해당연도 지원대상 품목 판매 및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해당연도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3.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폐업지원금

1 올해는 2개 품목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돼지고기



밤



※ 돼지고기 폐업지원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별로 지원 한도액이 있음

2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자인지 다음 요건을 확인해 보고,

- **2020년도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계속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 전부 임대자의 경우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합법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지) 또는 지방산림청(임야)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돼지고기 '12.3.15(한·미 FTA), 밤 '15.12.20(한·베트남 FTA)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별 최소 재배(사육) 규모 이상인 자**
  - 돼지 10마리, 밤 1,000㎡
- **2015년에 밤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돼지고기의 경우 2020년 9월 27일 기준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2020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증명 서류(본인이 준비해야 함)**
  1.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등)
  2. 고시일 직전 1년간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지원대상 품목 판매 및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3.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의 평균(54,189천 원, '15~'19년 올림픽 평균) 보다 적음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4.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사업 추진 절차

농업인 신청 ▶ 지자체의 서면·현지조사 및 심사 ▶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통보 ▶ 신청자 계좌로 입금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Q&A

Q1.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이 서로 다른 지역(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A. 생산 면적(사육 규모)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2. 토지 소유자와 재배자가 다른 경우, 누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입니다. 즉, 생산된 농산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임금·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3. 품목별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각 품목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금액은 해당 품목의 기준가격*과 2019년 가격 간 차액의 95%에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폐업지원금 지급금액은 해당 품목의 연간 평균 순수익액**의 3년치입니다. 조정계수는 직불금 지급신청 접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기준 가격은 직전 5년(2014~2018년)간 해당 품목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의 90%
** 연간 평균 순수익액은 직전 5년(2014~2018년)간 해당 품목 순수익액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

Q4. 돼지고기의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산출시 출하 마릿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사육하여 출하한 비육돈 출하 마릿수입니다.

Q5. 금년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0년도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표지에 안내된 신청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의 FTA이행지원센터 1899-4114 |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